

# 보상청구서류

## 사고 상황 통보

- 1 학교(기관)명:
- 2 소재지:
- 3 사고 일시:
- 4 사고 장소:
- 5 사고원인 및 경위(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):

### 6 피공제자(사고자) 현황:

구분	성명 (사고자)	학과명 (연구분야명)	소속신분 (대학생 등)	연락처 (휴대폰)	피해내용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- 7 사고처리 대책:
- 8 기타 참고사항:
- 9 업무처리 담당:

담당자 성명	부서명	부서 전화번호	휴대폰번호

# 보상청구서류

## 사고경위서

### ▶ 사고자 인적사항

사고일시	
사고장소	

### ▶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(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.)

※ 사고와 관련된 「부상부위사진, 연구실내부사진, 실습기구사진 등」 해당 대학 이메일로 첨부바랍니다.

### ▶ 피공제자(사고자) 현황

구분	성명 (사고자)	학번 (사원번호)	학과명 (연구분야명)	소속신분 (대학생 등)	연락처 (휴대폰)	주민번호 (앞자리)	이메일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
### ▶ 기타 참고사항 :

### ▶ 업무처리 담당

담당자 성명	부서명	부서 전화번호	휴대폰번호

피공제자(사고자)의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.

20 . . .

확인자(연구실 책임자) **지도교수 또는 학과장** 싸인



# 보상청구서류

##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신청서

**(수업료 손실 지원금 보상내용)**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에 따라 15일 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고 당 정규 학기를 마치지 못하여 수업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수업료 손실을 **100만원 한도** 내에서 지급합니다.  
**(지원금액)** 실제 납입한 수업료 - 반환 받을 수 있는 수업료

**(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보상내용)**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15일 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고 사용하던 기숙사시설의 잔여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기숙사비 손실에 대해 **30만원 한도** 내에서 지급합니다.  
**(지원금액)** 실제 납입한 기숙사비 - (기 사용 기숙사비+반환 받을 수 있는 기숙사비)

### 1] 계약사항

계약자 명		학교명	
연락처	전화	소재지	
	팩스		
타보험 계약	보험사명	보험가입금액	
	보험종목		

※ 타보험계약: 사고자의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상해의료비관련 보험종목을 기입해주세요.

### 2] 사고자(피공제자) 인적사항

성명		학과명	
주민등록번호	-*****	소속신분	
학번(사원번호)		전화	

### 3] 사고자 피해

사고일시		사고장소	
피해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 <input type="checkbox"/> 후유장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		
피해내용 (상병명 등)			

### 4] 수업료 손실 지원금 신청 (해당될 경우)

실제 납입한 수업료 ①		신청금액	
반환 받을 수 있는 수업료 ②		①-②	

### 5]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신청 (해당될 경우)

실제 납입한 기숙사비 ①		반환 받을 수 있는 수업료 ③	
기사용 기숙사비 ②		신청금액 ①-(②+③)	

신청인 (피공제자)	연구실안전공제 특별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20 . . .	신청인	<input type="checkbox"/>
신청내역 확인 (연구주체의 장)		계약자	<input type="checkbox"/>

필요증빙 서류	1. 수업료 납부확인서 2. 수업료 환불내역서(확인서) 3. 통장계좌 사본
	1.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2. 기숙사비 환불내역서(확인서) 3. 통장계좌 사본